

##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	1988. 6. 22	조례 제1083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2004. 6. 12	조례 제 521호
	2005. 10. 5	조례 제 668호
	2008. 10. 8	조례 제 957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전부개정	2009. 4. 24	조례 제 998호
일부개정	2017. 2. 24	조례 제1646호
일부개정	2017. 12. 11	조례 제1741호
일부개정	2022. 5. 17	조례 제230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용인시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, 2022. 5. 17〉

제2조(위원의 정수)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이라 한다)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용인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〈개정 2017. 12. 11〉

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 〈개정 2017. 12. 11〉

②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, 선임된 위원을 지체 없이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한다. 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〉

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.

제4조(위촉기간)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겸임금지) ① 용인시의 상근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. 〈개정 2017. 12. 11〉

② 삭제 〈2017. 12. 11〉

[제목개정 2017. 12. 11]

제6조(대표위원)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.

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.

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의회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>

제7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① 위원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 <개정 2017. 2. 24, 2022. 5. 17>

1. 삭제 <2022. 5. 17>

2. 삭제 <2022. 5. 17>

3. 삭제 <2022. 5. 17>

4. 삭제 <2022. 5. 17>

5. 삭제 <2022. 5. 17>

6. 삭제 <2022. 5. 17>

②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에 따라 용인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2. 11>

제8조(검사협조) 시장은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,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) ①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, 2022. 5. 17>

제10조(해촉 등) 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

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,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.

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〉

② 제1항의 사유로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〉

제11조(일비 및 여비의 지급)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. 〈개정 2017. 12. 11〉

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. 다만,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12. 11〉

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

제12조(일비의 계산) 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장에게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. 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〉

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·공휴일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의한 휴무일, 제11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. 〈개정 2017. 2. 24, 2017. 12. 11〉

제13조(지급기준) 위원의 일비,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. 다만,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을 준용한다.

〈개정 2017. 12. 11〉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〈1996. 3. 1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04. 6. 12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68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0. 8 조례 제957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7조제3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84조제3항”으로 한다.

⑧ 부터 ⑫ 까지 생략

부칙 <2009. 4. 24 조례 제99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2. 24 조례 제1646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 11 조례 제174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. 5. 17 조례 제2302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7. 2. 24>

구 분	액 수
일 비	15만원
여 비	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표 적용(결산검사위원 중 시의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동기준표 의원 상당액)

[별지 제1호서식]

위 축 장

주소(직위) :

성 명 :

용인시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 
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
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용인시의회의장 인